

의안번호	2218038
의 퇴 인	이연희의원
회 답 일	2026.8.31.
추계번호	26D1870
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조제1항 (답례품의 제공)	기부자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58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※ 현행법 ¹⁾ 은 답례품의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, 현행법 시행령 ²⁾ 은 답례품의 한도를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으로 규정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9조제1항 (답례품의 제공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한도 상향 관련(안 제9조제1항)

- 현행법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58조³⁾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와는 무관하게

- 1) **현행법 제9조(답례품의 제공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(이하 "답례품"이라 한다)을 제공할 수 있다.
- 2) **현행법 시행령 제5조(답례품의 한도 및 금지품목)**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"란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.
- 3) **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58조(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)** ① 거주자가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,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.

1.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: 고향사랑 기부금 × 110분의 100

답례품의 한도를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으로 동일하게 정하고 있으나, 개정안은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답례품 한도를 기부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하여 답례품 제공과 관련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현행법에 따른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혜택은 다음과 같음

기부금액(연간누적)		세액공제율	혜택예시
10만원 이하		100%	10만원 기부 시, 13만원 상당 혜택 (10만원 전액 세액공제+3만 포인트)
10만원 초과, 20만원 이하 (특별재난지역 포함)		44%	20만원 기부 시, 20만 4천원 상당 혜택 14.4만원(10+4.4) 세액공제+6만 포인트
20만원 초과분 (2,000만원 이하)	특별재난지역	33%	100만원 기부 시, 70만 8천원 상당 혜택 40.8만원(10+4.4+26.4) 세액공제 +30만 포인트
	특별재난지역 외	16.5%	100만원 기부 시, 57만 6천원 상당 혜택 27.6만원(10+4.4+13.2) 세액공제 +30만 포인트

자료: 행정안전부 2026년 고향사랑기부제 리플릿 내용 발췌

- 위 표에 따르면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58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100만원을 기부한 경우, 개정안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답례품을 50% 지급받는다면 현행 57만 6천원에 비해 기부자가 받는 혜택이 줄어들 수 있음
-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개정안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부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자 또는 기부금액이 100만원을 넘어서는 고향기부자 등이 될 수 있을 것임
- 다만, 위 표의 혜택예시에 따른 세액공제액은 전액 세액공제를 모두 받는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, 각 기부자가 이미 다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하여 전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 혜택예시보다 기부자가 받는 혜택이 줄어들 수 있고, 이 경우 소액의 기부자라 하더라도 개인별 공제액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
- 위와 같은 이유로 개정안에 따라 답례품을 100분의 50으로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부자의 범위와 세액공제액 감소액 등을 현 시점에서 추정할 수 없으며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

-
2.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: 10만원 × 110분의 100 + (고향사랑 기부금 - 10만원) × 100분의 40
 3.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: 10만원 × 110분의 100 + 10만원 × 100분의 40 + (고향사랑 기부금 - 20만원) × 100분의 15(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)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상욱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상욱	02-6788-4673	flyhigh@assembly.go.kr